

#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제출자

-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.

## 2. 근거 법령

- 2003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.

## 3. 제안 이유

-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일·숙직 수당 기준을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, 당직시설상태,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 소요액을 산정,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.

## 4. 주요 골자

- 당직근무수당 조항을 신설(안 제7조의2)
  -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.

## 5. 검토 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, 당직 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 규정을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나, 2004년 1월 1일 부터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본 조례에 당직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지급 근거의 명문화를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